

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-022호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3조 및 「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‘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’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3월 13일

산업통상부장관

1. 시행일자

- 2026년 3월 13일 00시

2. 최고액 지정 대상

-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

3.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

- 일반 석유제품의 최고액

보통휘발유	자동차용 경유	실내 등유
리터당 1,724원	리터당 1,713원	리터당 1,320원

-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

보통휘발유	자동차용 경유	실내 등유
리터당 1,743원	리터당 1,732원	리터당 1,339원